

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0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8. .
제출자: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, 기간제근로자 고용 등 단기간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발생 해소를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
- 나. 도서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차단으로 예산 절감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
- 다.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및 「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2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: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

(2024. 6. 30. 기준)

구분	작은도서관명	위 치	규모	장서수	좌석수	운영시간	운영인력	휴관일
1	누리봄 작은도서관 (2006.08.01.)	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4(북변동)	지상2층 (257.41㎡)	29,421	60	월~금 10:00~18:00	1	매주 토·일요일 법정공휴일
2	대곶 작은도서관 (2011.02.14.)	김포시 대곶면울생중앙로 36번길 19	지상1층 (277㎡)	19,560	57	월~금 10:00~18:00	1	매주 토·일요일 법정공휴일
3	구래 작은도서관 (2013.10.28.)	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 길 25(구래동)	지상2층 (125.2㎡)	12,565	19	월~금 10:00~18:00	1	매주 토·일요일 법정공휴일
4	하성 작은도서관 (2021.03.10.)	김포시 하성면애기봉로 806번길 68-13	지상2층 (236㎡)	11,439	55	월~금 10:00~18:00	1	매주 토·일요일 법정공휴일
5	김포 만화도서관 (2024. 10월중)	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2	지상1층 (187㎡)	-	-	월~금 10:00~18:00	1	매주 토·일요일 법정공휴일

※ 운양작은도서관은 모담도서관 개관(2025.4월중)으로 2024.12월말 폐관 예정

나.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간

다. 위탁방법 : 공개모집(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·선정)

라. 위탁범위 :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
마. 운영인력 : 사서 6명(관장 1명, 직원 5명)

바. 주요 위탁사무

-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·운영 및 시설·장비·비품 유지관리
- 자료 대출반납서비스 제공,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공공도서관의 대출반납서비스,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,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연계사업 협조
- 연 1회 이상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- 기타 도서관법,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, 위·수탁협약서 등에 의해 행해야 될 사항 등

3. 관계법령

가.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나. 「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2조(관리운영의 위탁)

다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2장(예정가격 작성요령)

라.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

4. 예산수반사항 : 연간 약 248,736천원(※변경가능 있음)

소관 관·과·소		도서관과
입 안 자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도서관과장 박준
	담 당 직위·성명	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
	담 당 자 성명(전화)	서하나 (5186-4652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2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(운영비 지원)
-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, 자료구입비 등 소요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건비는 사서6명(관장1, 직원5)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
 - ※ 사서 인건비 : 2024년 김포시 임기제 연봉하한액 보수 기준
 - 기본급, 4대보험료, 퇴직적립금 반영(기타 수당은 제외)
 - 관장 1명 :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적용(1인당 44,477,950원)
 - 직원 5명 :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적용(1인당 27,451,600원)
- 운영비는 예산서 기준 작은도서관당 평균 소요금액으로 산출
 - ※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비 예산 : 36,000천원
 - 작은도서관의 시설현황 및 규모에 따라 운영비 상이
 -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인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비 6,000천원 추가 반영
- 도서구입비는 예산서 기준 작은도서관당 평균 소요금액으로 산출
 - ※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5개관 도서구입비 예산 : 25,000천원
 - 도서구입비 1개관 평균 5,000천원

【참고】 2025년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비용 추계	비 고
인 건 비	181,736	- 2024년 김포시 임기제 연봉하한액 기준 - 기본급, 4대보험료, 퇴직적립금 포함
운 영 비	42,000	- 작은도서관 운영비, 전기,수도, 통신요금 등 -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
도서구입비	25,000	- 신간도서, 희망도서 등 도서구입비
합 계	248,736	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248,736	254,188	259,804	265,588	271,546	1,299,862
인건비	181,736	187,188	192,804	198,588	204,546	964,862
도서구입비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운영비	42,000	42,000	42,000	42,000	42,000	210,000

※ 비용추계는 변경 가능 있음.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○ 해당 없음

4. 작성자 : 교육문화국 도서관과 과장 박 준 팀장 윤 세 영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
세 출	248,736	254,188	259,804	265,588	271,546	1,299,862
국비						
도비						
시비	248,736	254,188	259,804	265,588	271,546	1,299,862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수입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○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14.>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③ 삭제 <2020.2.14.>

③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22조(관리운영의 위탁)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관리수탁자)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,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.

⑤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위탁재산의 관리·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·감독의 의무가 있으며,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·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